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제안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후보님께

2022년 5월 18일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5대 과제

- 정책과제1 : 부산광역시 인권행정체계 구축
- 정책과제2 :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
- 정책과제3 : 돌봄이용자와 돌봄노동자의 돌봄기본권 보장
- 정책과제4 : 공영장례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축
- 정책과제5 : 의료안전망 지원체계 강화

부산인권정책포럼 함께하는 이들 (31개 단체 가나다 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산울산지부, 녹산이주민의집, (사)문화복지공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광역시감염병관리지원단, 부산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산노동권익센터,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인권포럼,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노동인권연대, (사)부산여성회, (사)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이주민과함께, 이주와인권연구소, 사회복지연대, 인권도시부산(의원연구모임), 이주민문화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제안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후보님께

21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인권’입니다. 인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행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선진적인 행정이기도 합니다. <부산인권정책포럼>은 인권도시 부산의 정책적 토대구축을 목표로 2019년 12월 18일 부산의 인권시민단체와 연구자, 관련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발족하였습니다. 발족 후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오거돈 전 시장께 전달하였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재난 약자의 안전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포럼 개최 및 정책의견서를 부산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어 ‘차별없는 인권도시 부산만들기 한일포럼’, ‘2021, 부산의 인권현안 10대 과제’, ‘사회복지노동자의 인권현실’ 등을 주제로 부산의 인권 현안들을 꾸준히 실천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지난 4월 20일 10차 포럼 ‘2022 부산의 인권정책 5대 과제’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 모인 부산인권정책포럼 참여단체들은 ‘인권도시 부산’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5대 과제를 담은 ‘부산의 인권정책 제안서’를 오늘 귀 후보께 전달합니다. 모쪼록 인권의 가치가 빛나는 행정이 실현되어 부산시민들이 자랑하는 아시아의 인권도시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18일

부산인권정책포럼 함께하는 이들 일동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5대 과제

■ 정책과제1 : 부산광역시 인권행정체계 구축

- 1) 인권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인권전담조직 강화 및 전문성 확보 (인권과 신설)
- 2) <시민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 3) 시장이 주관하는 인권정책회의 개최
- 4)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강화 (합의제행정기구로의 비전)

■ 정책과제2 :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

- 1)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강화
- 2)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3)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기억 공간 마련
- 4) 부산광역시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립

■ 정책과제3 : 돌봄이용자와 돌봄노동자의 돌봄기본권 보장

- 1) ‘부산광역시 돌봄기본조례’ 제정
- 2) 공적 돌봄 제공체계 —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
- 3) 부산광역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 정책과제4 : 공영장례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축

- 1) 부산광역시 조례로 구군 조례 통폐합
- 2)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설치
- 3) 공영장례 전용빈소 마련
- 4) 지원대상 확대

■ 정책과제5 : 의료안전망 지원체계 강화

- 1) 부산광역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
- 2) 이주민 의료 통·번역센터 설치

정책과제 1 : 부산광역시 인권행정체계 구축

□ 필요성 및 현황

- 부산시는 인권의 제도화를 위해 2012년 2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인권보장과 그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사회 여건과 부산시정의 변화에 따라 13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짐.
- 2019년 1월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로 개정된 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부산시 역할이 구체화 되었고, 아래의 주요 인권정책이 실행되고 있음.
 - 인권전담 부서의 설치 (인권노동정책담당관)
 - 인권 관련 제도 실행 (시민인권모니터링단, 인권보호관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 2020년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 (10대 핵심과제 포함 100대 과제 선정)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설치 ('21.12.10 개소)
 - 부산시 인권위원회의 활성화 및 3차 정책권고 시행
 - 인권단체 및 구군, 타 시도와의 네트워크 형성

□ 주요 과제

- 1) 인권과 신설 — 인권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인권전담 조직 강화 및 전문성 확보
 - 제2차 부산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에 제시된 인권증진팀, 인권보호팀, 인권영향평가팀으로 구성된 ‘과’ 수준으로 격상 및 인권업무 전문성을 갖춘 인원 충원으로 인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
 - 전문성과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인권보호관 확충 필요(3인 이상)
 - 부산시의 인권행정 업무는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 소속 인권증진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인권증진팀이 부서 총괄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권업무를 전담하는 현 인원(5~6명) 과 1명의 인권보호관으로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 인권 및 노동정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 ※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 설치('19년 1월) 이후 총 4명의 담당 과장이 부임했음
- 2) <시민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 인권기본조례에 명시된 <시민인권헌장>은 부산시가 인권을 위한 정책수립 및 활동을 위한 규범을 정하고, 공표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중요함. 인권 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시민 참여 방식을 통한 인권헌장 제정이 필요함.

3) 시장이 주관하는 인권정책회의 개최

-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진 및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시장 주관 아래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부산시 인권위원장이 참석하는 인권정책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음.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 중)
- 현재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인권위원장이 관련 부서와 인권정책협의회 운영 중이나, 현재의 인권위원회 및 인권부서의 위상으로 부서의 칸막이를 넘어 부서 간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움.
- 인권정책은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중요한 인권정책의 실행 및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

4)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의 강화 (합의제행정기구로 비전 수립)

- 정책권고 및 인권정책협의회 운영 등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만큼, 심의·자문의 수준을 넘어 인권정책 수립 및 행정을 견인·협력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 참여 등 권한 강화 및 전국 최초로 인권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구로 세우는 비전 수립 필요.
- 2019년 1월, 행정부시장에서 민간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조례 개정 이후 인권위원회가 활성화되어 타 광역자치체의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민관거버넌스 구축 인권정책 견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

정책과제 2 :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 강화

□ 필요성 및 현황

- 지난 21년 8월,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제1호 정책권고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부산시 차원의 보다 진전된 조취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조례제정, 피해자 및 유가족 확인, 자료 발굴, 진상규명을 위한 전문팀 구성,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팀을 구성하여 피해자들의 어려운 생활환경 및 건강상태에 따른 긴급지원, 의료지원 등을 실시가 있었음. 또한 형제복지원 사건 자료의 보존 및 자료관 운영 추진과 부산

광역시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립에 대해서 제기함.

- 이에 부산시에서는 「피해자 명예회복과 치유, 그리고 평범한 일상 회복을 위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자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확대와 피해자의 생활안정시책 발굴·추진, 지속적인 피해자 발굴과 명예회복사업 추진 등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일련의 사업들은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주요과제

1)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강화

- 현재 부산시 직영구조인 종합지원센터의 성격을 변환하여 시민사회, 피해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운영 구조로 만들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 역할과 기능을 확충 및 강화해 나가야 함.
- 이에 따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단순 상담이나 프로그램 진행방식보다 긴급사례관리, 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위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치 등을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협력적인 체계 구축이 요청됨.
-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필요

2)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현재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조례는 신고접수 및 심리상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른 생활상의 어려움, 특히 건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지원사업의 근거가 없음. 피해자들의 의료지원을 지원사업에 추가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부산시는 부산시 내에 공공의료기관 또는 협력의료기관, 별도의 기금조성과 위탁 진료 등의 방식을 도입해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비용부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의료 영역 중, 구강 보건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바,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피해당사자의 삶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기억 공간 마련

-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이란 공간에서 발생한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이었음. 따라서 형제복지원 사건 자체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부산시 차원의 기억 공간이 필요함. 현재 형제복지원 관련 자료들이 조금씩 발굴되고 있으며,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제대로 된 보관 공간이 없음. 따라서 부산시민들에게는 인권교육의 현장으로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기억 공간으로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4) 부산광역시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립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를 출발로 부산의 민주항쟁 과정을 비롯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료센터 설립 추진 필요.

정책과제 3 : 돌봄이용자와 돌봄노동자의 돌봄기본권 보장

□ 필요성 및 현황

-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기와 COVID-19으로 인해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사회적 돌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돌봄에 대한 수요를 기존의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체계 안에서 해결했던 시민들에게 그 무게가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가족으로의 회귀’가 일어났음.
- 그로 인해 돌봄 정책이 사실상 역행하며 2020년 당시 돌봄 공백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음. 또한 돌봄 노동은 필수 노동임에 따라 감염에 노출된 상황에도 중단할 수 없는 공적 특성이 있음.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돌봄노동자들은 다른 지원책 없이 개인 또는 기관의 몫으로 안전을 유지하며 돌봄 현장을 지켜왔음. 돌봄 정책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그 노동자로부터 생산되고 전달되는 것이나 부산은 공적 돌봄 체계가 그동안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음

□ 주요과제

1) ‘부산광역시 돌봄기본조례’ 제정

- 시민의 돌봄권, 시장의 책임성, 민관협력, 돌봄노동자의 노동권리를 담은 ‘부산광역시 돌봄기본조례’ 제정되어야 함
- 민간위탁 또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제공되는 사회복지, 사회서비스는 예산 등으로 인해 공적 성격을 띠지만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함. 재난상황 등과 같이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에 사회가 대처해야 할 때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공적 돌봄 제공체계 확립 —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

- 감염병 유행 상황이 아니더라도 시장화되어 있고 개인의 관리 영역으로 넘겨져 있는 현재의 돌봄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에서 직접 돌봄 노동자를 고용 또

는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 모델이 추진되어야 함.

-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시민이더라도 돌봄이 필요하면 책임지고 누군가는 그 현장에 가야 함. 홈리스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에서부터 스스로 영양 및 복약관리 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게는 돌봄이 제공되어야 함. 기존의 바우처 방식에 따라 시간과 이용요금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돈보다 생명’의 가치로 사회적 돌봄이 이루어져야 함.

3) 부산광역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노동자들의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만족할만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돌봄노동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함
- 돌봄노동자와 관련된 조례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4곳에 있음. 경상남도의 경우 2019년도 제정된 조례에 의해 2020년 센터를 설치,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중부권 돌봄노동자지원센터(창원) 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에 동부권(김해)과 서부권(진주) 센터도 설치됨

정책과제 4 : 공영장례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축

□ 필요성 및 현황

- 2021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공영장례조례> 제정, 2022년 6월 30일 시행 예정.

※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7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조례 제2조 정의)

□ 주요과제

1) 부산광역시 조례로 구군 조례 통폐합

- 16개 구군 중 동구 등 5개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사업화한 조례를 시행 중이나 장례 비용만 200% 지원할 뿐 신청제도에 머물러 있으며 부산시의 조례와는 차이점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리가 필요함. (서울시의 경우 광역시 조례로 통합하였음)
- 공영장례의 핵심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공공에서 보장

하는 것임. 현재 장사 업무는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고가 없거나 혹은 시신인도를 포기하여 무연고자로 분류되는 경우 각 구·군에서 계약한 의전업체가 시신을 처리하고 있음.

2)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설치

- 장례를 앞둔 시민에서부터 공영장례를 집행할 읍면동-구군-광역시의 행정기관과의 연계 등을 위해선 상담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
- 조례에 ‘시장은 공영장례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2조 상담)’에 따라 상담센터를 두게 되어 있으나 그 역할과 기능이 조례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현재 부산시는 설치계획이 없는 상황임.

3) 공영장례 전용빈소 마련

- 영락공원의 빈소 또는 부산의료원 장례식장과 같이 현재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 중 공영장례 전용빈소를 마련하거나, 민간장례식장 중에서 협력 장례식장을 마련해 전용빈소를 확보해야 함.
- 동시에 공영장례 매뉴얼 수립 및 장사업무 관계공무원 교육, 의전업체 선정 방식 등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공영장례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함
- 단순히 그동안 해왔던 시신처리가 아니라 애도할 수 있는 시간, 즉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장례에 기반이 되는 전용빈소는 부산시가 반드시 확보해야 함.

4) 지원대상 확대

- 공영장례조례 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가 협소하므로 향후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함.
- 지원대상 확대 방안 마련과 공영장례 매뉴얼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함.
- 2020년 보건복지부 지침변경으로 ‘가족대신장례’가 마련되었음으로,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함.

정책과제5 : 의료안전망 지원체계강화

□ 필요성 및 현황

- 부산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기관을 지정하는 것 외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안전망 개념의 병원이 없음. 부족한 공공의료와 의료안전망 상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은 부산시민들은 심각한 의료공백과 의료안전망의 붕괴를 겪었음.
- 공공의료기관의 부족 속에서 유일하게 의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던 부산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적절한 대비책 없이 단기간 내 입원환자를 전원 및 퇴원시키고 응급환자와 입원·수술 환자를 받지 않아 노숙인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건강악화로 사망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했음.
- 최근 보건복지부는 모든 의료급여 기관에서 노숙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나 실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노숙인 3차 의료기관 지정 및 취약계층 이주민을 위한 이주민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음.

2. 주요과제

1) 부산광역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

- 부산은 부산의료원 외에 다른 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새로 설립될 공공병원에 안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함. 공공병원 외 추가적으로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서울시를 제외하고 안전망병원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없지만, 수도권 지역은 공공병원의 수가 부산보다 많으며 무료진료소 등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음.
- 이에 해당 조례를 통해 민간병원 중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여 안전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인 서부산권에 건립 예정인 서부산의료원을 이주민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의료수요를 해소해야 함.

2) 이주민 의료 통·번역센터 설치

- 이주민 의료전달 체계에 있어 통·번역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언어는 기본권임으로 의료안전망 체계에 포함되어야하는 필수 사업임. 이에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개정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이주민의료통번역센터 설치 의무화하고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시민사회가 유지해온 사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시행 중인 이주민의료통번역사업은 보조사업의 성격으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의 하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통번역활동가 양성, 전화상담 및 파견 조정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구조가 없어 민간단체인 (사)이주민과함께 사무국이 무료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임.